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유철현

대한민국 0613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15-5, 5층 (역삼동, 아이티빌딩)

발송일 (일/월/년) 2019년 01월 11일 (11.01.2019)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BPP2018-0083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11594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8년 09월 28일 (28.09.2018)

우선일 (일/월/년)
2017년 09월 29일 (29.09.2017)

국제특허분류(IPC)
H04N 13/156(2018.01)i, H04N 21/854(2011.01)i, H04N 21/81(2011.01)i, G06T 19/00(2011.01)i

출원인
클릭트 주식회사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9년 01월 11일 (11.01.2019)

심사관
안정환
전화번호 +82-42-481-8633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10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10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10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KR 10-2017-0096129 A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라이선싱, 엘엘씨) 2017.08.23

D2: KR 10-1661142 B1 (삼성전자주식회사) 2016.10.11

1 신규성 및 진보성

1.1 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에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1에는 '오브젝트를 표시하는 단계 (D1: 도면 3a-3k 참조); 커서가 표시되는 단계 (D1: 단락 [0043] 참조); 커서로부터 캐스트된 광선이 타깃 오브젝트와 교차하는 위치에서, 타깃 오브젝트의 표면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부착된 소스 오브젝트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D1: 단락 [0058]; 및 도면 3a-3k 참조); 표면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곡면일 경우, 접촉 포인트(들)에서 그 법선 벡터가 동일 선형이 되도록 이들을 서로 부착되는 단계 (D1: 단락 [0059] 참조); 및 커서와 오브젝트가 합성되어 표시되는 단계 (D1: 도면 3a-3k 참조)를 포함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기 인용문헌 D1에는 청구항 제1항의 '서버로부터 가상현실 영상데이터를 수신하여 제1 레이어에 할당하는 단계; 및 적어도 하나의 컨트롤러의 제어정보를 표시하는 제2 레이어를 생성하는 단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상기 차이는 인용문헌 D2의 'Layer #1 (TV image)을 정의하는 단계 (D2: 도면 6a 참조); 및 Layer #2 (Control Object Layer)를 정의하는 단계 (D2: 도면 6a 참조)'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문헌 D2에 기재된 상기 특징을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은 없습니다.

청구항 제2항에 기재된 발명의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제시된 '헤드셋은 사용자의 헤드 위치 및 방향을 추적할 수 있는 것 (D1: 단락 [0031] 참조)' 및 인용문헌 D2에 제

추가 기재란에 계속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청구범위, 발명의설명 및 도면의 명료성에 관하여 또는 청구범위가 발명의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청구항 제3항에는 앞서 언급되지 않은 '가상현실 데이터'가 '상기 가상현실 데이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불명료합니다 (PCT 제6조).

(참고: '상기 가상현실 데이터'는 '상기 가상현실 영상데이터'의 오기로 보입니다.)

청구항 제4항의 '항목 이용하여'는 '항목을 이용하여'의 오기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구항 제4항에는 앞서 언급되지 않은 '클라이언트'가 '상기 클라이언트'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불명료합니다(PCT 제6조).

청구항 제8항에는 앞서 언급되지 않은 '클라이언트'가 '상기 클라이언트'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불명료합니다(PCT 제6조).

청구항 제8항은 '가상현실영상 제공방법'에 관한 것이고, 청구항 제8항의 종속항인 청구항 제9항은 '가상현실영상 재생방법'에 관한 것으로 청구하는 대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9항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PCT 제6조).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시된 '제어 오브젝트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일 수 있는 것 (D2: 단락 [0019]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3항에 기재된 발명의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제시된 '복수의 오브젝트를 사용자 뷰에 오버레이하는 것 (D1: 단락 [0041]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4항에 기재된 발명의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제시된 '커서로부터 캐스트된 광선이 타깃 오브젝트와 교차하는 위치를 결정하는 것 (D1: 단락 [0058]; 및 도면 3a-3k 참조) 및 접촉 포인트들에서 법선 벡터가 동일 선형이 되도록 서로 부착하는 것 (D1: 단락 [0059]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5항에 기재된 발명의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제시된 '3D 메쉬 모델은 초당 수회로 빈번하게 자동 업데이트되는 것 (D1: 단락 [0040]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6항에 기재된 발명의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제시된 '헤드셋은 사용자의 헤드 위치 및 방향을 추적할 수 있는 것 (D1: 단락 [0031] 참조), 커서로부터 캐스트된 타깃 오브젝트와 교차하는 위치를 결정하는 것 (D1: 단락 [0059]; 및 도면 3a-3k 참조) 및 접촉 포인트들에서 법선 벡터가 동일 선형이 되도록 서로 부착하는 것 (D1: 단락 [0059]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7항에 기재된 발명의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제시된 '커서는 사용자의 시선을 시각화한 이미지인 것 (D1: 단락 [0043]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8항에 기재된 발명의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제시된 '사용자의 시선과 정렬되게 지향된 소스 오브젝트 및 툴 이미지를 계속해서 디스플레이하는 것 (D1: 단락 [0053]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9항에 기재된 발명의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제시된 '헤드셋은 사용자의 헤드 위치 및 방향을 추적할 수 있는 것 (D1: 단락 [0031] 참조) 및 사용자의 시선과 정렬되게 지향된 소스 오브젝트 및 툴 이미지를 계속해서 디스플레이하는 것 (D1: 단락 [0053]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따라서 청구항 제2항 내지 제9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과 D2의 결합에 의하여 자명하므로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은 없습니다.

청구항 제10항에 기재된 발명은 청구항 제1항의 방법을 실행시키 위하여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저장된 가상현실영상 재생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인용문헌 D1 및 D2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청구항 제10에 기재된 발명을 도출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청구항 제10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2)에 따른 진보성은 없습니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4)에 따라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